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비대면 진료 3600만 건에 사고 0,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코로나 기간 중인 지난 3년 동안 국민 3명 중 1명이 의사와 직접 접촉 없이 화상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이후 2만5900여 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처방 과정의 경미한 실수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치다. 일부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이나 의료 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3년간의 비대면 진료 중 재택 치료를 제외한 736만 건을 분석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86.2%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반대 측이 주장하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77.8%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호응도 높았다.

지금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첫발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OECD 38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칠레·체코 등 5~6국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만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득권층 반발과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약 처방, 차량 공유 서비스,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법률 중개 서비스 등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기득권층 반발을 의식해 두꺼운 규제 장벽을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혁신 기술도, 신산업 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공공기관 유치 성과내는 전략으로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 수립이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여러 시도에서 유치 대상 공공기관 명단을 속속 발표, 선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충청남도에서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모두 34개 공공기관 유치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특화기능 공공기관으로 탄소중립, 문화체육, 중소벤처영역 중심 21곳 및 우선선택권제 적용 13곳을 더한 수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혁신도시 성과 계승과 지역산업 상생 차원에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5곳을 비롯해 지역 적합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모두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우선유치대상기관은 코레일유통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기관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유치대상 기관 및 추진일정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기에 강원도는 성과를 내도록 정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배제된 혁신도시가 2020년 10월 지정됐으나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대형기관 9곳과 100명 이상 4곳 등 13개 기관 우선 배정 전략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있고 지난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 선포한 성과를 토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1300여명이 근무하는 10곳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발표한다고 해서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기관을 먼저 접촉해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엔 구체적인 건의 작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발표한다고 해서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기관을 먼저 접촉해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엔 구체적인 건의 작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타시도 움직임 중에서 주목할 만한 방안은 이전기관 직원이 수도권을 떠나도 불편이 없도록 영재고 설립 등 교육여건과 종합병원 개선 등 의료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사례에서 보듯 주요 3개 도시 간 발전 경쟁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갈 길이 더 멀니다. 강원도 공공기관 유치가 성과를 내려면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대상 기관을 설득하려면 유치 지역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도내 사정과 타시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 -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이하 ‘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3.10.(금)부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 ‘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
 - (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
 - (지원대상 확정)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專用)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23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 59만 2천원
 - 다만,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천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3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000원에서 334,8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57,200원 지원
 -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 가능)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
 - * 예시) 59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 구매영수증(구매액: 3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시 잔액인 29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 가능
-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음
- 이번 지원은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 「민법」 시행 전이라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유족 인정해야 -

-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게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ㄱ씨는 순직한 아버지 ㄴ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ㄴ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ㄴ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ㄱ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ㄴ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유족으로, ㄴ씨가 사망했을 때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ㄱ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
- 불공정 계약 방지 사례 교육 확대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
-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법」 제정 조속 추진 -

-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개정),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신설) 및 양도계약서(신설) 등
 -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상생센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통해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 '20년 12월 유정주 의원 발의, '22년 11월 김승수 의원 발의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과제

고 경 훈 | 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주제의 쟁점 및 필요성

1. 문제 제기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지방행정환경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확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 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역할에 상응하는 지방의원의 의정비제도를 종합 검토 할 필요가 있음

2. 주제의필요성

-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수준의 의회 역량 확보를 위한 적정 의정비 체계의 검토 필요
- 유급제 도입 이후 개정 지방자치법(2005. 8. 4. 일부개정, 법률 제7670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의정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2008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 라인이 제시됨

3. 주제의 주요 쟁점 사항

- 의정비 계산식은 복잡한 회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획일화되어 있는 계산식으로 인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월정수당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아직도 의정비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문제점

의정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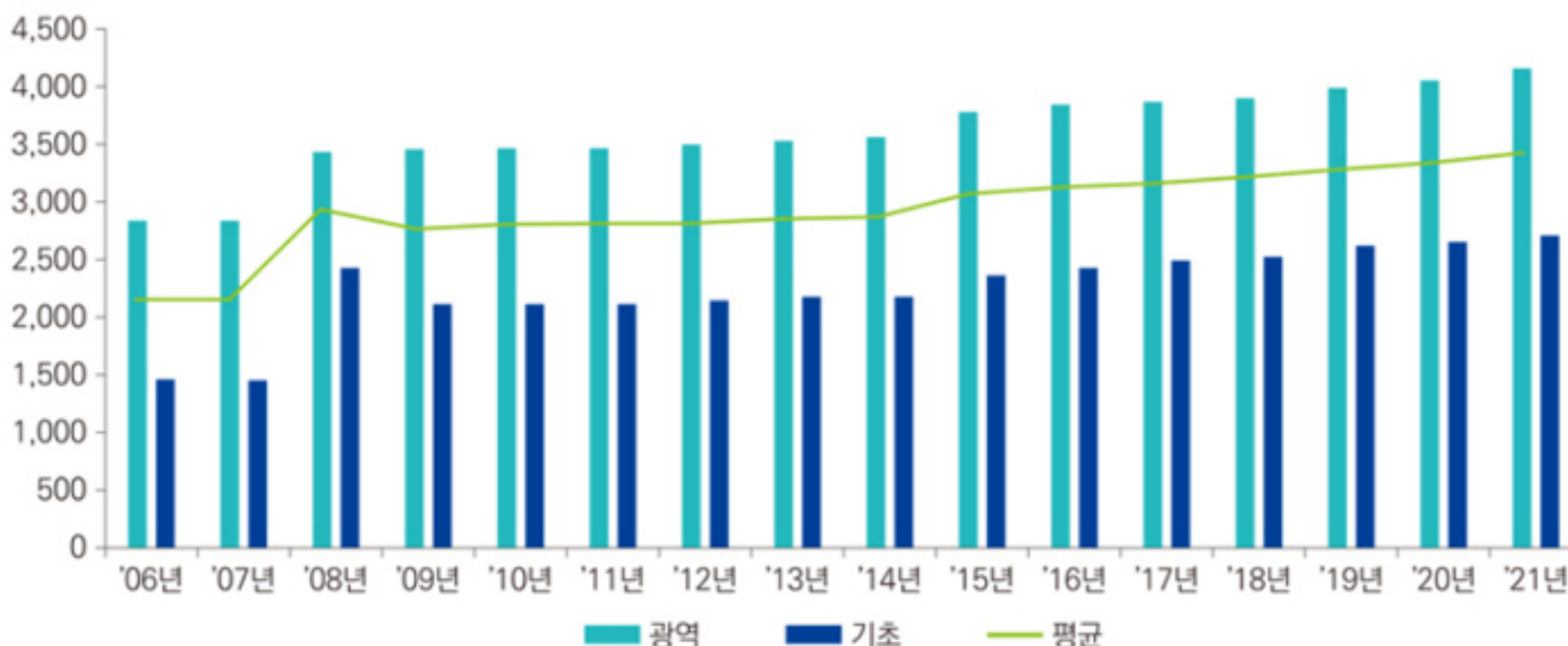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21년까지 15년 동안 월정수당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광역의회 월정수당은 2.5% 증가, 기초의회 월정수당은 4.3% 증가
-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36.3%의 증가 있었고,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5.3%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후 매년 평균 1% 후반대의 증가세를 보임

[표]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06년	'10년	'14년	'16년	'18년	'20년	'21년	증감률
광역	2,884	3,503	3,589	3,872	3,943	4,090	4,182	2.5%
기초	1,468	2,124	2,199	2,447	2,538	2,676	2,742	4.3%
평균	2,176	2,814	2,894	3,160	3,241	3,383	3,462	3.1%

[그림] 연도별 월정수당 변화



■ 의정비 결정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정 활동 실적과 연계된 분석이 필요함 즉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전문성, 성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결정에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예를 들면, 지역의 재정수준, 행정수요, 유형,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만을 제시함.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그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고경훈·이상묵, 2008)
- 월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고 기준에도 지역마다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같이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어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즉, 월정수당 산정에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고경훈, 2012)
- 현재는 의정비 책정의 객관적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민의 반응을 참조하여 결정하거나 주변 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월정수당비 산정 기준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음(고경훈, 2012)

의정비 제도개선의 대안

- 어느 수준이 적절한 의정비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어 도출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의정환경과 행정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직무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정비 지급제도와 적정 의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즉,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 간에 대한 분석 또는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업무량 및 직무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 지방의원의 개별적 업무량 측정 기준으로는 먼저 지방의원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방의원직의 수행 업무를 사전에 규정해야함

출처 : 고경훈 지방의정연구센터 소장

알기쉬운 정책용어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❶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❷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❸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알기쉬운 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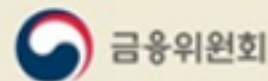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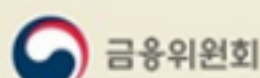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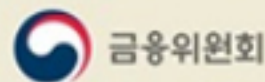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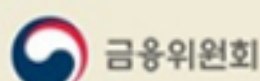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알기쉬운 정책용어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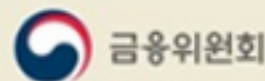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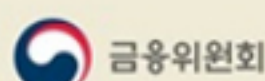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